

도보

제2442호 2007년 1월 19일(금)

선 람	가관의 장

규 칙

- 충청북도규칙 제2564호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3
- 충청북도규칙 제2565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13
- 충청북도규칙 제2566호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45

고 시

- 충청북도고시 제2007-24호 상구곡지구 받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54

공 고

- 충청북도공고 제2007-22호 전기공사업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55
- 충청북도공고 제2007-24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설치 계획 승인 공고·56
- 충청북도공고 제2007-3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공고·····57
- 충청북도공고 제2007-39호 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58
- 충청북도공고 제2007-41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공고·····60

시군 행정

- △ 고 시
- 청원군고시 제2007-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고시·····61
- 옥천군고시 제2007-105호 옥천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62

☞ 뒤쪽 이어서

회 람									
--------	--	--	--	--	--	--	--	--	--

△ 공 고

청주시공고 제2007-41호 공인공고	63
청주시공고 제2007-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66
충주시공고 제2007-38호 충주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엄정신명학원)공사 완료공고	70
제천시공고 제2007-57호 공인폐기공고	71
청원군공고 제2007-45호 공인의 등록사항 공고	72
영동군공고 제2007-23호 공인 등록·폐기 공고	73
음성군공고 제2007-53호 공인폐기공고	75
단양군공고 제2007-83호 공인공고	76

규 칙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2007년 1월 19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규칙 제2564호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심의회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정책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투자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농정본부장, 건설재난관리본부장, 복지여성국장, 문화관광환경국장, 정책기획관이 된다.

②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된다.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기타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의장의 임무) ①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다.

제5조(회의소집) ①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소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의의결) ①심의회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제출 실·국·본부장이 한다. 다만, 필요시 본청의 관계 실·과·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공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간사가 한다.

③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의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의결은 공포와 재의로 한다.

제7조(의안제출) ①의안은 도지사 또는 전결권자의 방청결정을 받은 후 입안부서의 실·국·본부장 및 직속기관장(이하 “실·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출한다. 이 경우 사업소장 등이 실질적인 담당부서인 경우에는 관련 실·국·본부장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안이나 또는 규칙안을 입안한 실·국·본부장은 법무통계담당관의 법제심사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원발의의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거나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때에는 소관 실·국·본부장은 조례안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공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출절차 및 의안상정) 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긴급한 의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회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소요부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심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사항은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사전 협의를 거쳐 소관실과 및 팀장(이하 “실·과·팀장”이라 한다)이 직접 심의회에 상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간사는 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며, 각 심의안의 상정자는 심의회 개회일 2일전까지 심의안을 의장, 부의장, 위원에게 배부토록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심의결과처리) ①법무통계담당관은 심의회 심의결과를 해당실과 및 팀(이하 “실·과·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 규칙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입안부서에서 도지사의 확정결재를 얻은 후 의회에 제출 한다.
2.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은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를 한다.
3. 규칙안은 사전보고를 거친 후 공포한다.

③부결 또는 심의보류된 조례 규칙안은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없이 당초안 그대로 심의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제10조(합의 등 사전절차) ①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안으로서 2 이상의 실·국 본부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국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기관간 사전협의나 사전승인이 필요한 의안은 미리 관계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거나 부담을 주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 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회의록) ①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다만,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 의결사항은 소관 실·과 팀장이 작성한다.

②간사 또는 소관 실·과 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의 안 표 지 서 식 >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	

안 건 명

제 출 자	○○실장(국장)○○○
제출연월일	년 월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별지 제2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

1. 의 안 명 :
2. 제 안 이 유 :
3. 주 요 내 용 :
4. 의 안 전 문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조례·규칙개정시에 한함)
6. 관계법령 발췌 : 별첨
7. 사전협의 또는 승안신청 결과 :
8. 입법예고 결과(사전입법예고 대상 조례에 한함) :
9. 기타 참고자료 : 별첨
10. 제안자 의견 :

[별지 제3호서식]

제 회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회 의 록				
일 시	년 월 일			
장 소				
·참석대상 위 원		참 석 위 원		불 참 위 원
·심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 건 - 조 례 안 : 건 - 규 칙 안 : 건 - 임의적심의의결안건 : 건 			
회의내용	별지와 같음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제11조			
제 회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함				
년 월 일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회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조례·규칙명	
의안번호	
입법구분	제정(), 개정(), 폐지()
제출자	
주요내용	
의결일	년 월 일
의결내용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수정통과시 수정내용	
비고	

[별지 제5호서식]

공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조례명	
의결일	
이송일	
제출자	
<p><input type="checkbox"/> 검토의견 ○ 적법타당성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재의요구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9조, 제98조 관련이유</p>	

<개 정 사 유>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2006. 6. 29)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구성원 일부변경 및 심의안건 조정과
-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장 명칭변경 등 효율적인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2조)
 - ▶ 민간위원(5인이상) 위촉규정 신설
 - ※ 민간위원은 주민의 조례 제정 또는 개폐 청구시에만 심의 참여
-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심의안건에서 제외
-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의 실·국장 명칭변경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을 이에 공포
한다.

2007년 1월 19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규칙 제2565호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전 신설"이라 함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의 기존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하고, 도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설립한 공장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신설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장이전 증설"이라 함은 도외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이 도내지역으로 공장을 증설하거나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이전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3. "도내공장 증설"이라 함은 도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이

기존공장을 양도 또는 철거·폐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내 지역 또는 기존부지에 공장을 설립 한 것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①충청북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단) ①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및 통상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3.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자문관의 역할) ①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정보제공과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 및 유치활동을 할 수 있다.

②자문관은 투자유치 활동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자

문단의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로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자문관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료·활동경비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자문료 : 별표 1

2. 투자유치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필요한 활동경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에서 정한 제4호의 여비지급 구분 적용

제7조(자문관 해촉) 도지사는 자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장 투자진흥기금의 운용

제8조(기금용자 대상 및 기준) ①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용자대상은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입주하는 기업으로써 투자금액 및 고용기준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 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이상이거나, 건축·시설 등에 대한 원자재 50퍼센트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경우. 다만, 군지역은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2. 용자한도는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

②제1항에 의거 공장부지매입을 위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부지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용자 신청서(이하 "용자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용자신청 업체 및 취급금융기관,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용자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장부지매입비 용자지원 기업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그 부분을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용자금 상환 및 이율) ①용자금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②용자금의 이자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기금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

③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자상환을 연기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용자금 회수) ①시장·군수는 용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3.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 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용자금의 회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위탁협약 체결 등) 조례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용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세부시행사항) 기금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3조(민원처리의 특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무의 종류와 처리 절차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조례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가 되어야 한다.

②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분양가 차액보조금) ①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고용보조금)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후 5년까지 지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은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시설을 도내에 이전하여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하되 고도기술수반 산업이나 첨단업종에 우선지원 한다. 다만,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벽돌,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플라스틱 제품, 담배제 건조업, 재생재료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이전에 따른 경제적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조례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본사이전 또는 연구소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한 경우 건물취득가액 산정은 당해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한다.

③본사이전 및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이전 및 연구소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28조제3항에 의한 공장이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체결(공장설립 승인 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에 공장등록증명 또는 부분가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장 또는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4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건축 공정율이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시에는 기 지급한 보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제19조(도내공장 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①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한 도내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 체결일 또는 토지매입일로 부터 4년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조금 신청은 제18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조례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 이상이어야 한다.

②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정 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21조(이전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지원) 조례 제31조에 의한 이전기업이나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이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및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별지 제6호 내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4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조례 제36조제2항에 의한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 받을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업(투자)계획서를 제반 관련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보조금의 결정·정산) ①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 용도외의 사용제한) 제15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타업종 전환 시기) 조례 제3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이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라 함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할 때를 말한다.

제28조(포상금 지급) ①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별지 제15호 및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 및 지원액에 대하여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인(법인·단체 포함 한다) 이상인 때에는 2인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 3의 투자유치 실적 2인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에 의거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당해연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다음연도 1월에 지급한다.

④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며,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9조(포상금 지급기준) ①포상금은 기업유치실적 건별로 총 투자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이상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로부터 4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0조(인사상 우대) ①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 포인트제 지침」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②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투자유치 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31조(다른 조례·규칙의 준용) 보조금 및 기금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또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충청북도의외국인투자진흥관실및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설치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자문료 지급기준(제6조제2항관련)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p>○ 1회당 지급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컨설턴트 자문 : 30만원 - 이사 및 수석컨설턴트 자문 : 20만원 - 일반 컨설턴트 자문 : 10만원 <p>※ 다만, 국내외 법률검토 및 국내외 투자계약 자문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문건당 기준으로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장 또는 업무협약체결서서본1부 ○ 자문 성과물 ○ 청구서

[별표 2]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기준 (제28조제2항관련)

□ 외국인투자 기업유치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①1,000만불 미만	투자유치금액의 0.1%
②1,000만불이상~5,000만불 미만	①+1,000만불 초과액의 0.05%
③5,000만불이상 ~ 1억불 미만	①+②+5,000만불 초과분의 0.01%
④1억불 이상	①+②+③+1억불 이상 초과분의 0.005%

□ 국내기업 투자유치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상한액
100억까지	투자금액의 0.1%	1,000만원
100억~500억까지	1,000만원+(투자금액-100억원)×0.0007	3,800만원
500억~1,000억까지	3,800만원+(투자금액-500억원)×0.0006	6,800만원
1,000억 초과	6,800만원+(투자금액-1,000억원)×0.0005	2억원

□ 공무원

투자유치금액	지급기준율	성과금 상한액	인사우대기준
100억까지	투자금액의 0.03%	300만원	실적가점
100억~500억까지	300만원+(투자금액-100억)×0.0002	1,100만원	실적가점
500억~1,000억까지	1,100만원+(투자금액-500억)×0.0001	1,600만원	실적가점, 호봉승급
1,000억 초과	1,600만원+(투자금액-1000억)×0.0001	3,000만원	특별승진

※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시는 원화로 환산한 금액임

[별표 3]

투자유치 실적 2인 이상인 경우 차등적용 기준(제28조제2항관련)

적 용 기 준	적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30%

[별지 제1호서식]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 신청서 (제8조제2항관련)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전화 (H.P)	
			E-mail	
		FAX		
입주 유형				
공장 소재지				
분양 면적	공장용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기준공장면적율(%)	
평당 가격	원	총부지 가격	백만원	
부지 계약일		상시고용인원	명	
총 투자액	백만원	시설 투자액	백만원	
공장 설립일		업종 (분류번호)	()	
용자 신청액	원	용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사업계획서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별지 제2호서식]

공장부지매입비 용자지원 기업 관리대장(제8조제4항관련)

업체 현황	상호(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H P:			
		E-mail:	FAX:			
	사업자등록번호		공장 등록일			
	투 자 금 액		고 용 규 모			
	업 종		주요 생산품			
년 매 출 액		억 원	수 출 액	억 원		
지원	총부지면적	공 장 부 지		기준공장면적을		
	m'(평)	m'(평)				
	부지 구입비 용자지원현황	계	도 비	시·군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투자 진행 사항 확인	구 분	년	년	년	년	년
	투 자 금 액					
	고 용 인 원					
	원 자 재 조					
특이 사항						

[별지 제3호서식]

분양가 차액 보조금 신청서(제15조제3항관련)

신 청 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 소재지)		전화	
			FAX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창업 <input type="checkbox"/> 기존공장이전 <input type="checkbox"/> 공장증설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분양가	원/평	분양가납부방법	년 거치 년 분할상환	
분양면적	공장용지면적(m)	건축면적(m)	기준공장면적율(%)	
공장설립일 (공장설립예정일)		업종 (분류번호)	()	
공장시설투자금액	백만원	신규채용 상시고용인원	명	
보조사업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	만원 (₩)			
<p>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양가차액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실행이행각서1부 4.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창업계획서 (입주계약체결로 공장설립 승인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본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6. 공장의 시설투자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제17조제3항관련)

외국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신고된 사업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				
구분				
소재지				
설립·이전일자				
업종·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	만원 (USD 상당)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화 :)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분) 사본 1부 4.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정연 또는 사업장 증설 개업의 경우에 한함) 서류 1부				

[별지 제6호서식]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서(제18조제3항관련)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주소소재지)		전화 F A X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전	이 전 후	
본사 소재지				
공장 소재지				
본사근무인원				
건물	기존 (임차)	취득가액 (임대료)	원	원
	신규 취득	토지매입비	원	원
		건축비	원	원
		합 계	원	원
보조금 신청액		백만원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 본사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 4.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5.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7호서식]

연구소이전 보조금 신청서(제18조제3항관련)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화 F A X
연구소이전내역			
구분		이전 전	이전 후
본사 소재지			
연구소 소재지			
연구소 근무인원			
건물 ①	기존 (임차)	건물취득가액 (임대료)	원 원
	신규 취득	토지매입비	원 원
		건축비	원 원
		합계	원 원
시설장비 ②	구입비	원 원	
	이전비	원 원	
보조금 신청액(①+②)		백만원	
기타 지원요청			
<p>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 (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 등 연구소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에 따른 건물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3.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 이용시) 4. 투자이행각서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1부 6. 건축비, 시설장비 이전·설치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7.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별지 제8호서식]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서(제18조제4항관련)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주소개지)		전화		
	F A X				
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					
공장 설립(준공일)		업종 (분류번호) ()			
공장시설 투자내역	과 목		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투자계획	건축공정율 50%	공장등록(완료)
	총 투자금액				
	토지대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 설치비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 신청	건축공정 50%이상일 때		백만원		
	공장등록(완료)	총 지원금액	백만원		
		기 지원금액	백만원		
		금회 신청 금액	백만원		
기타 지원요청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div>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을 확인서 1부 (건축 공정률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시설의 이전시설 또는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최종 신청시 첨부)					

[별지 제9호서식]

도내공장 증설 시설투자비 지원금 신청서(제19조제1항관련)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주소제외)			전화 F A X	
기존 소재지					
공장 이전지					
공장설립(준공일)		업종(분류번호)		()	
공장증설 투자내역	과 목		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합 계		투자계획	건축공정율 50%	공장등록(완료)
	토지 매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기계장치 부속설비			
보조금 신청	건축공정율 50%이상 일때		백만원		
	공장등록(완료)		총 지원금액	백만원	
			기 지원금액	백만원	
		금회 신청 금액	백만원		
기타지원요청					
<p>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 1부 3. 건축 공정율 확인서 1부 (건축 공정율 50%이상일 경우 신청시 첨부) 4. 건축허가(신고)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최종 신청시 첨부) 5. 공장증축 시설투자금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투자이행각서 1부 7. 공장등록증 또는 부분 가동증명서 사본 1부 (최종 신청시 첨부) 					

[별지 제11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21조관련)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전화	
		F A X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매입) <input type="checkbox"/> 임대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이전부문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공장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공장설립일		업종 (분류번호)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신규채용인원	기존공장이전인원
보조금신청액	백만원		
<p>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고용인원 인적사항 및 운용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사본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2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제24조관련)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자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인)

소 속 : 자치단체명

직 위 :

성 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서(제24조관련)

1.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업종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원)			투자규모
			동산	부동산	부채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m ²)	건축계획면적(m ²)					
	계	공장	연구소	연수동	숙소동	기타부대시설

3. 사업비 투자계획

구분		금액(단위:백만원)	비고
토지매입			
건축비			
시설 설치비	기계설치		
	부속설비		
계			

4. 활용계획

5. 건설계획(5년간)

구분/년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토지매입					
건축비					
시 설	기계설치				
설치비	부속설비				

5.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주 요 내 용

6.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

[별지 제14호서식]

보조금 정산서(제25조제3항관련)

1. 보조금의 종류 :

2. 보조사업 수행자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사업개시 일자	

3. 보조사업 내용

사업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		보조금액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날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붙임 1. 보조사업추진실적 1부
 2. 보조금세부집행내역 1부
 3. 집행영수증 사본 및 세금계약서 (간이영수증을 제외한다) 각 1부
 4. 행사의 유인물·사진 등 1부
 5. 기타 증빙자료 1부

[별지 제16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제28조제1항관련)

신청인	협회 또는 단체명				전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치 기업 현황						
구분	기업명	소재지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m ²)	종업원수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현소재지						
이전지역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계	부지매입비	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건축비	공작물	기계설비	부속시설등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성명	소속	직위(직급)	기여도 (%)	기여내용		확인
						(인)
						(인)
						(인)
						(인)
						(인)
<p>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치추진경위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기타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 정 사 유>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주 요 내 용>

- 투자유치 자문관 회의소집 및 경비지원
 - 자문료, 활동(여비)경비 등 지급
- 투자진흥기금 용자 대상 및 기준 등
 - 투자금액 50억 이상, 고용기준 100인 이상
 - 원자재 50퍼센트 이상 도내에서 조달
 - 용자한도 :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이내
- 타 시·도 이전기업 및 도내공장 증설시 지원 등
-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안 제20조)
 - 산업·농공단지 분양실적 70퍼센트 이하
 -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 이상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을 이에 공포 한다.

2007년 1월 19일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규칙 제2566호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지원대상)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 등으로 한다.

1. 충청북도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기타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실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및 단체의 현황 및 지원·활동 실적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충청북도여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타당성
3. 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5. 사업의 수행 능력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 ①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자는 사업개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기금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개시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당시의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장소 등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서면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 중단 및 회수) ①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한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대장 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여성발전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여성발전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제9조(감독)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지원신청서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금액 (천원)	총사업비	기금	자부담	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따로붙임			
<p>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법인 및 단체명 :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 (인)</p> <p>충청북도지사 귀하</p>				
<p>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 일반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p>				

(별지 제3호 서식)

충청북도여성발전기금정산보고서								
기관(단체)명 :								
사 업 명 :								
대표자	성 명				실무자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정 산 총 괄 표 (단위: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기금	자부담	계	기금	자부담	계	기금	자부담
※ 이자발생액 :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여성발전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법인 및 단체명 : (직인) 주 소 : 대표자 : (인)</p> <p style="margin-top: 10px;">충청북도지사 귀하</p>								
<p>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p> <p>2. 사업비 집행내역 1부</p> <p>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1부</p> <p>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p> <p>5. 기타 증빙자료 각 1부</p>								

(별지 제3호 서식의 부표)

1. 지원사업 추진 실적

사업 개요	
추진 실적	
효과	
문제점 및 건의	

2.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원)

집행내역	집행액	비고
계		

[비고]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여성발전기금관리대장

년월일	예 금			인 출			잔 액	비 고
	종 류	금 액	이 율	기 간	적 요	금 액		

(별지 제5호 서식)

여성발전기금교부대장

년월일	적 요	예 금			교부액	잔 액	확 인
		단 체	소재지	대표자			

(별지 제6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년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개 정 사 유>

- 충청북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여성발전기금 지원대상 기준을 정함
- 여성발전기금 지원여부·지원금액 등을 충청북도 여성정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여성발전기금 지원 중단·회수 사항 및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고 시

충청북도고시 제2007 - 24호

상구곡지구 받기반정비사업 시행인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 봉양읍 상구곡지구 받기반 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9일

충청북도지사

1. 목 적

- 집단화된 밭을 농로개설,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 농업생산기반정비로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 내용

사업명	위 치			면적 (ha)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				
상구곡지구 받기반 정비사업	제천	봉양	구곡 명도	52.0	1,781	경 작 로 포 장 : L=3,772m 송 급 수 관 로 : L=10,870m	제천시장

3. 사업예정기간 : 2007. 1. ~ 2007. 12.

4. 세부사업 내용은 제천시 건설과에 비치된 사업인가서 및 설계도서와 같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 건설과 (전화 043-640-55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충청북도공고 제2007 - 22호

전기공사업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공고

성 명 : (합)한전설비 (대표이사 노병식)

서류의 명칭 : 전기공사업 처분사전통지서 송달

위의 서류를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 12. 13일 및 12. 22일 2차례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07년 1월 19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성 명 (명칭)	노병식 【(합)한전설비】					
	주 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762 벽산apt 상가 1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인력 부족)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 용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						
5. 법적근거 및 조 문 내 용	- 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6.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관명	충청북도	부서명	자원관리팀	담당자	곽용관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전화 번호	043-220-3344
		전자우편 주 소	kwak@cb21.net			모사 전송	043-220-3349
		제출기한	2007년 2월 10일 (10:00)까지				

충청북도 공고 제2007 - 24호

폐기물처리시설(소각)설치 계획 승인 공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설치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9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명 :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건설사업
2. 위치 :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38번지 일원
3. 부지면적 : 71,870㎡
4. 시설명 : 소각시설
 - 시설용량 : 8,334kg/hr (200톤/일)
 - 소각방식 : 스토카 형식
5. 처리대상폐기물 : 생활폐기물
6. 폐기물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 청주시, 청원군
7. 사업기간 : 2007. 1 ~ 2009. 6
8. 사업비 : 67,438백만원
9. 시행자 : 청주시장

충청북도공고 제2007 - 38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변경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07년 1월 19일

충청북도지사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등록 연월일	주된사업	연락처	등록 구분
제2006-1-충북-38호 (251)	제천장애인학교	제천시 동현동 풍한 연립B동 106호	정희교	'06. 12. 28.	· 장애인의 문해교육 및 생활교육 ·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직업 재활교육 등	646-9878	신규등록
제2007-1-충북-1호 (252)	충북지역공동체시민 문화센터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540-12	김홍장	'07. 1. 8.	·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 건전한 일자리 나눔 운동 · 신규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사업 등	262-8848	신규등록
제186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재난통신지원단제천시구단	제천시 천남동 시청길21 자원봉사회관 1층	김동호	'07. 1. 8.	· 재난통신지원 · 재난상황 전파 · 무선통신 교육 · 재난예방 홍보활동 등	645-5973	대표자 변경등록
제172호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충청북도회 청주시지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309-4	이배영	'07. 1.15.	· 투철한 국가관과 명예를 계승 발전하는 사업 · 장애인과 불우이웃 후원사업 ·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복지사회 구현사업	255-2381	대표자 변경등록

충청북도 공고 제2007 - 39호**도로사용 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사용 폐지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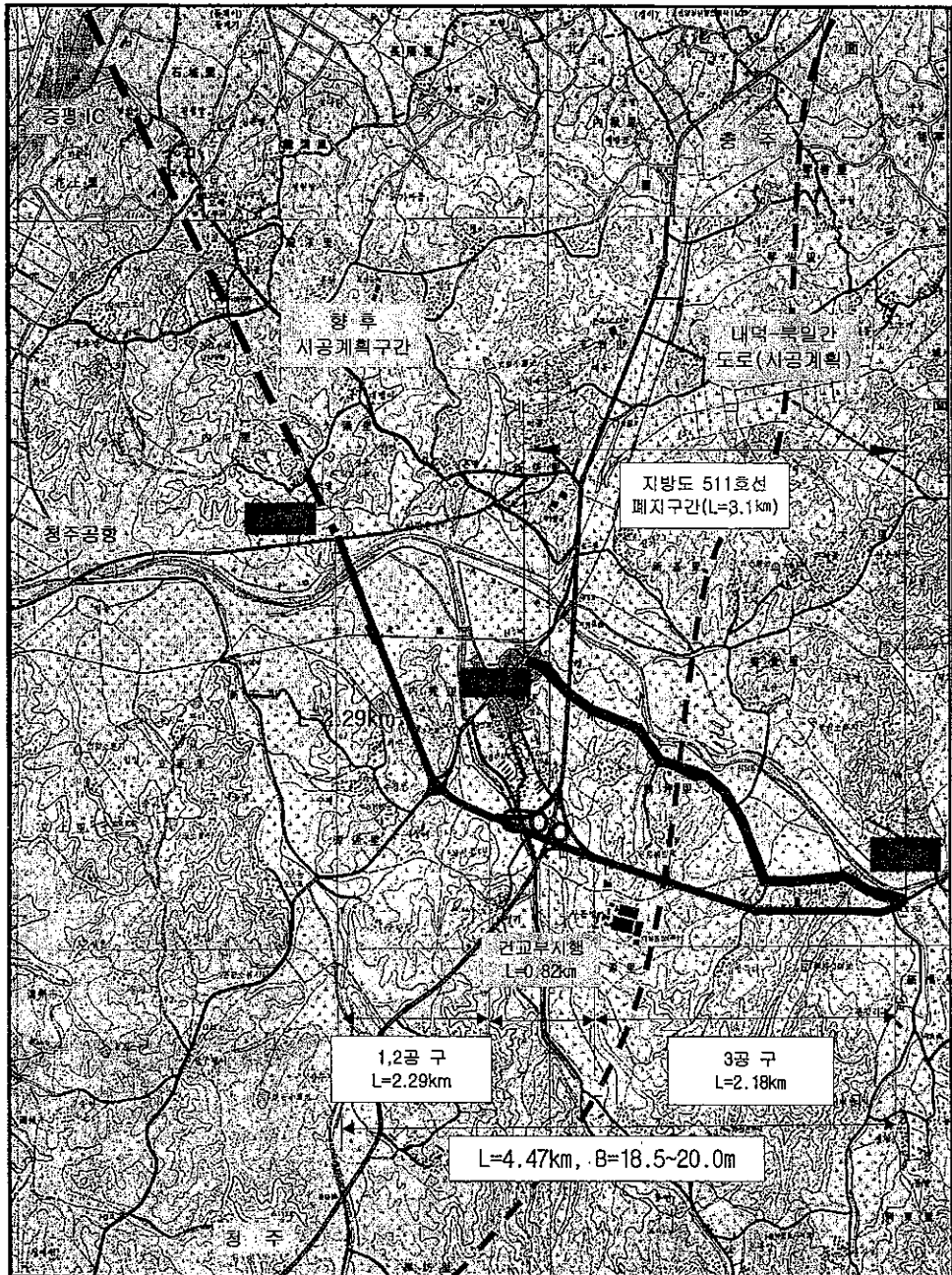
2007. 1. 19.

충청북도지사

1. 도로의 종류 : 지방도
2. 노 선 명 : 지방도 511호(미원~초평선)
3. 사용개시 폐지구간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부터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까지(3.1km)
4. 중요경과지 : 없 음
5. 전용구간 : 청원군 내수읍 학평리부터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까지(3.1km)
6. 중요구간 : 없 음
7. 폐지일시 : 2007. 1. 12

□ 位置圖

1 : 50,000



충청북도 공고 제2007 - 41호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19

충청북도지사

구분	합병 전 (법인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합병 일
합병된 법인		경성전기(주) 대표 : 정구상 (151311-0001479)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34-5	2006. 12.22
합병된 법인	정보통신공사업 (120429)	태광텔레콤(주) 대표 : 정구상 (151311-0007302)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34-5	
합병 후 존속법인	정보통신공사업 (120429)	경성전기(주) 대표 : 정구상 (151311-0001479)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434-5	

※ 합병신고 수리일 : 2007. 1. 15

시 군 행정

청원군고시 제2007 - 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고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60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제9항,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월 19일
청 원 군 수

1. 처분의 제목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
2. 사업명 : 청원군 오창면 주성리 주택건설사업
(충청북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7-15)
(충청북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97-15-1)
3. 사업주체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동 262-15 2층 보성건설㈜
4. 사업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60번지외 5필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송대리 90번지외 5필지
5. 사업규모
○ 대지면적 : 37,327㎡
○ 건축연면적 : 78,623.636㎡
○ 아파트 10개동 9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 취소일자 : 2007. 01. 16.
7. 취소사유 : 1998년 8월 공사중단하여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2006년 9월 사업부자가 개인에게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각되는 등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및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주택법 제16조 제9항 및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함.
8.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에 따른 의제처리의 취소 사항
○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산림의형질변경허가), 도로점용허가, 사도설치허가, 오수처리시설설치신고,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 건축허가

옥천군 고시 제2007 - 105호

옥천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

옥천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청산면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미리 고시합니다.

2007. 1. 19.

옥 천 군 수

1. 제한 사유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선계획-후개발의 효율적인 군(도시)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함.

2. 제한대상 및 주요내용

- 제한지역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중인 청산면 산업단지 지역
- 제한대상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신고 『농지법』 제36조 제37조 농지전용허가, 신고
- 제한기간 : 2007. 02. 01 ~ 산업단지지정 고시일까지(3년이내)

3. 제한 제외대상

- 제한기간일 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 산지전용허가
- 제한기간일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승인,인가,허가,신고등이 접수된 행위

4.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 5. 기타사항 : 동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건설과 [TEL 043) 730-3462~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공고 제2007 - 41호

공 인 공 고

(등록및 폐기공인)

2006. 12. 29일자로 조직변경등으로 인하여 충주시공인조례제6조 및 11조의 규정으로 관련공인을 등록.폐기하고 동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19.

충 주 시



다 음




1. 등록공인·최초사용일 및 폐기공인 폐기일 : 2007. 1. 22.
2. 등록.폐기 공인내역 : 붙임
3. 사유 : 직제개편으로 직급상향조정 및 민원업무로 인증기 도입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종료

직제개편으로 공인폐기

등록공인 및 폐기공인

① 등록 공인(3개)

공인명	서체	규격 및 모형	인영
충주시장인 장묘시설관리소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7cm×2.7cm 정방형	
충주시 장묘시설관리소장인	한글전서체	2.4cm×2.4cm 정방형	
충주시 장묘시설관리소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4cm×2.4cm 정방형	

② 폐기 공인(10개)

공인명	글씨및규격	인영	공인명	글씨및규격	인영
충주시 투자유치지원실 인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0cm×2.0cm)		충주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3.6cm×3.6cm)	
충주시 장묘시설 관리소장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1cm×2.1cm)		충주시문화 회관관리사 무소장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4cm×2.4cm)	

공인명	글씨맞규격	인영	공인명	글씨맞규격	인영
충주시문화회관 관리사무소 분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0cm×2.0cm)		충주시문화회관 관리사무소 분임정수관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2.0cm×2.0cm)	
충주시문화회관 관리사무소수입 금출납원의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1.8cm×1.8cm)		충주시문화회관 관리사무소세입 세출의현금출납 원의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1.8cm×1.8cm)	
충주시문화회관 관리사무소일상 경비출납원의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1.8cm×1.8cm)		충주시문화회관 관리사무소분임 물품출납원의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1.8cm×1.8cm)	

끝.

청주시공고 제2007 - 5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청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7. 1. 19.

청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94-1번지일원(우림필유 주변도로)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동동 우림필유아파트 신축공사에따른 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 도 로

일련 번호	사업의 명칭	위 치	규 모	비고
계	2개 노선		L=381m B=15-20m	
1	중로1-65호선 도로개설	신봉216-19~신봉209-12	L=165m B=20m	
2	중로2-19호선 도로개설	신봉164-14~신봉208-17	L=216m B=15m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25번지 부평라이온스벨리 A-119
- 성 명 : 우림건설산업(주) 대표이사 강 명 규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기 간 : 인가일로부터 ~ 2008년 6월 31일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7. 1. 19. ~ 2007. 2. 8(21일간)
- 장 소 : 청주시청 도시건설국 도시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8. 기타 관련서류는 청주시청 도시건설국 도시과(☎220-6364)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이해관계조사서

NO.1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을 소유자		
	동	지번				주소	성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성명	
1	신봉	208-16	임	97	97	과산 창천선평 241	진주강씨방곡파종중							
2	"	194-1	전	23	23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3	"	195-5	대	320	320	경기 용인시 여북동 428-4	우림테크(주)							
4	"	195-6	전	112	112	경기 용인시 여북동 428-4	우림테크(주)							
5	"	196-1	대	76	76	청주 흥덕구 병명 873-1	유길영		기목1층	시멘트벽돌	23.68㎡		청주 흥덕 병명동 873-1	유길영
6	"	196-12	답	344	344	청주 흥덕구 병명 873-1	유길영		담장	콘크리트	3.6m			
7	"	196-14	답	183	183	청주 흥덕구 병명 873-1	유길영		경남무인	20년	2주			
8	"	198-2	도	1	1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정화조	시멘트벽돌	1식			
9	"	198-3	전	111	111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담장	합석(H=3.0)	13m		청주 흥덕 병명동 873-1	유길영
									대문	합석(H=3.0)	7m		청주 흥덕 병명동 873-1	유길영
									가옥1층	시멘트벽돌	1(42.5)			
									가옥1층	시멘트벽돌	1(27.74)			
									담장	콘크리트	25m			
									간나루	H6.0*R30	1주			
									주목외	30/20/20년	각1주			
									창고	목조	40			
									대관		1식			
10	"	199-2	도	11	11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11	"	199-3	전	89	89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가옥1층	시멘트벽돌	1(58.31)		청주 흥덕 신봉동 200-3	이봉욱
12	"	200-10	대	17	17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천동45	우림건설산업(주)		창고1층	목조	1(8.12)			
									담장	콘크리트	9.2m			
									창고1층	블럭조	1(28)			
13	"	200-6	도	117	117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14	"	200-7	전	42	42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15	"	200-8	대	321	321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빈소	시멘트벽돌	2(5.6)		청주 흥덕 신봉동 200-8	변중후
									세면장	시멘트벽돌	1(8)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에 의하여 확인직상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이해관계조사

NO.2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토지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상영
	동	지번				주소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16	신봉	200-9	도	55	55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17	"	201-4	대	16	16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18	"	202-4	도	23	23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19	"	202-7	답	282	282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20	"	202-8	답	1	1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21	"	203-11	도	7	7	청주 흥덕 신봉 209-1	(합)원성화학						
22	"	203-5	도	83	83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23	"	203-12	전	20	20	-	청 주 시						
24	"	203-8	전	61	61	-	청 주 시						
25	"	203-9	전	54	54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26	"	203-10	전	195	195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27	"	204-1	답	38	38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28	"	205-2	답	134	134	-	청 주 시						
29	"	205-3	답	88	88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30	"	206-2	답	57	57	-	청 주 시						
31	"	206-3	답	42	42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32	"	206-4	답	8	8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33	"	207-2	답	142	142	-	청 주 시						
34	"	207-3	답	109	109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35	"	207-4	답	90	90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36	"	208-17	전	36	36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45	유림건설신입(주)						
37	"	208-3	대	85	85	청주 흥덕구 신봉동 신3	신 상 봉					청주 흥덕 신봉동 208-3	신상봉
38	"	208-5	대	47	47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45	유림건설신입(주)						
39	"	209-12	장	650	650	청주 흥덕 신봉동 209-1	(합)원성화학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시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에 의하여 확인작성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이해관계조사서

NO.3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지적 (㎡)	면적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의의 권리	건물 및 시설물		건물 및 시설물 소유지		
	동	지번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소	정 명
40	신봉	216-16	임	1	1	정주 흥덕 신봉동 214-7	(주)삼성교통		사무실(1.2층)	조립식판별	1(282.08)	정주 흥덕 신봉동 214-7	삼성교통
41	"	216-17	대	385	385	정주 흥덕 신봉동 214-7	(주)삼성교통		임 장	콘크리트	17m		
42	"	216-18	대	38	38	정주 흥덕 신봉동 214-7	(주)삼성교통		창 고	경량철골조	1(24)		
43	"	216-19	전	367	367		정 주 시		은행나무		5주	정주 흥덕 신봉동 214-7	삼성교통
44	"	217-8	장	529	529	경기 성남 분당 구미 288	강 일 규		폐수처리장	경량철골조	1(16.64)		
45	"	217-9	장	104	104	서울 영등포 아의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폐수처리시설		1		
46	"	217-4	장	587	587	서울 영등포 아의동15-23	대한주택보증(주)		수도시설		1		
47	"	465-34	구	80	80		(국)건설교통부		정 화 조		1		
48	"	465-37	구	69	69		(국)건설교통부		개 시 광		1		
49	"	468-2	도	563	563		(국)건설교통부		아의작업장	콘크리트	1		
계		49필지		6,910	6,910				싸이로,분쇄기	실 바	각1		
									공 장	시멘트벽돌	1/(680)	성남 분당 정자 7 두산 위브빌딩은 A동 2122	강일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승허서 및 인감증명에 의하여 확인작성함.

충주시 공고 제2007 - 38호

충주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엄정신명학원)공사완료공고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389-12임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학교:신명학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98조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07. 1. 19.

충 주 시 장

1. 사업의 시행지 : 충주시 엄정면 용산리 389-12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충주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나. 사업의 명칭 : 학교법인 신명학원 기숙사 부지조성 사업
3. 사업의 규모
 - 부지면적 : 11,650㎡
4. 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충주시 엄정면 신만리 416번지
 - 성 명 :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 우태욱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일 : 2002.01.23
 - 준공일 : 2007.01.11

제천시 공고 제 2007-5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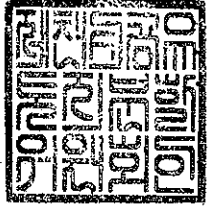
공 인 폐 기 공 고

제천시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고 동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일

제 천 시 장

1. 공인 폐기사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기간 종료
2. 공인 폐기연월일 : 2007. 1. 1.
3. 폐기공인인명

공 인 명 칭	제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
공 인 인 영	
서체 및 규격	3.6×3.6, 한글전서체(정방형)

청원군공고 제2007 - 45호

공인의 등록사항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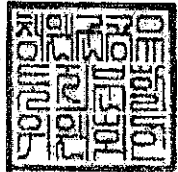
청원군공인조례 제17조(공인의 폐기) 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동조례 제10조(공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1. 19

청 원 군 수

1. 등록일 : 2004. 4. 01 .
2. 등록공인의 폐기일 : 2006. 12. 31 .
3. 폐기사유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종료

○신조(폐기)공인명 및 인영

신조공인명			폐기공인명		
공 인 명	글씨및규격	인 영	공 인 명	글씨및규격	인 영
			청원군공유토지 분할위원회인	한글전서체 정방형 (3.5cm×3.5cm)	

영동군 공고 제2007 - 23호






공인 등록·폐기 공고











영동군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폐기 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0일

영 동 군 수

- 1. 공인의 등록·폐기 사유 : 영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부서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
- 2. 공인의 등록·폐기 연월일 : 2007년 1월 10일
- 3. 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07년 1월 10일

등록인영		등록인영	
공인명	인영	공인명	인영
영동군투자유치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영동군주민생활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영동군복지여성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영동군산림경영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영동군도시개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폐 기 인 영		폐 기 인 영	
공 인 명	인 영	공 인 명	인 영
영동군사회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영동군산림축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영동군소도읍육성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영동군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인	
영동군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경리관인		영동군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징수관인	
영동군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지출원인		영동군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영동군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수입금출납원인		영동군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물품출납원인	

음성군 공고 제2007 - 1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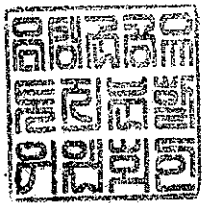
공인 폐기 공고

음성군 공인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폐기하였기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1 월 9 일

음 성 군 수

- 1. 폐기 사유 :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종료(2006.12.31)
- 2. 폐기공인의 폐기일 : 2007. 1. 12.
- 3.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공 인 명	인 영
음성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	

단양군 공고 제 2007- 43 호

공 인 공 고

단양군공인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15 .

단 양 군 수

- 1. 공인 사용개시일 : 2007. 1. 15 .
- 2. 신조 사유 : 단양군조직개편
- 3. 신조공인인명

신 조 공 인 명	신조공인인명
단양군복지여성과일상경비출납원인	